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82

제안년월일 2003. 3. 19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의회의 성숙한 운영과 도정발전을 위한 의회운영위원 연수시 의회운영과 관련된 제도와 규정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토론한 결과

의장·부의장 선출방법 보완, 의안 및 결산심사 기능강화 등 의회운영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함과 동시 의회가 도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간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이루고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제안하게 된 것임.

2. 주요골자

가. 의장·부의장 선거에 5분이내의 정견 및 소견을 발표할 수 있는 단서조항 신설 (안 제8조제1항)

나. 회기 임박하거나 회기중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검토시간 부족으로 의안의 졸속심사가 우려되는 만큼 이를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안건접수기일을 신설함. (안 제20조제2항)

다.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를 "도지사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시정연설 또는 제안설명"으로 자구 수정함. (안 제68조제1항)

라. 의회에서 결산심사 결과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함. (안 제72조제3항)

마. "도지사등의 출석요구"조항에서 「도정에 대한 질문」 조항을 분리 신설하고자 함. (안 제73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6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당일 5분이내의 정견 및 소견을 반표할 수 있다."

제2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모든 의안은 집회일 7일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 제1항중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를 "도지사 또는 교육감으로부터"로, "제안설명"을 "시정연설 또는 제안설명"으로 한다.

제72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의회는 본회의 의결후 도지사, 교육감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등 시정을 요구하고 도지사, 교육감 및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다음 회기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3조 제4항을 삭제하고,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도정에 대한 질문)①본회의는 회기중 도정 및 지방교육행정 전반을 대상으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다.

②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늦어도 질문일 본회의 개회시간 4일전까지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답변일 본회의 개회시간 2일전까지 의장에게 답변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신 설)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당일 5분이내의 정견 및 소견을 발표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도지사·교육감·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개정 2000. 6. 2)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20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모든 의안은 집회일 7일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 행	개 정 안
제68조(예산안 심의)①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68조(예산안 심의)①··········· ··········도지사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시정연설 또는 제안설명······························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2조(결산의 심사) ① ~ ② (생 략)	제72조(결산의 심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의회는 본회의 의결후 도지사, 교육감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등 시정을 요구하고 도지사, 교육감 및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다음 회기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73조(도지사등의 출석요구) ① ~ ③ (생 략)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한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일전까지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답변시간 2일전까지 의장에게 답변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3조(도지사등의 출석요구)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신 설)	제73조의2(도정에 대한 질문) ①본회의는 회기중 도정 및 지방교육행정전반을 대상으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다. ②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늦어도 질문일 본회의 개회시간 4일전까지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답변일 본회의 개회시간 2일전까지 의장에게 답변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